**‘합기도부’ 동아리 회칙**

**제 1장 총칙**

**제 1조 [동아리 명칭]**

① 본 동아리의 명칭은 “합기도부”로 한다.

**제 2조 [목적]**

① 합기도 및 기초체력운동을 배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3조 [동아리 소재]**

① 본 동아리의 소재지는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.

**제 2장 임원진 및 집행부**

**제 1조 [임원진의 임기]**

① 임원진은 회장, 부회장, 총무로 정의한다.

② 임원진의 임기는 1년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한 학기로 줄일 수 있다.

③ 부득이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.

1.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학

2. 2학기에 선출된 임원진

**제 2조 [임원진 선출 방식]**

① 임원진의 선출은 임기종료 예정인 직책을 매 학기 말에 지원을 받아 선출된다.

② 지원이 없을 경우, 다음학기 재학 예정자 중 투표로 선출된다.

**제 3조 [임원진]**

① 회장은 동아리 내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조한다.

③ 총무는 재정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.

**제 4조 [집행부]**

① 집행부는 임원진과 집행부원으로 구성되며, 집행부원은 회원 중 지원을 받아 선출된다.

② 집행부는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가진다.

1. 동아리 대표자 회의 참가 및 의결권

2. 회칙 변경 발의권

3. 기타 중요안건에 대한 발의권

③ 집행부의 의결은 집행부 회의를 통해 진행한다.

**제 5조 [집행부 회의]**

① 집행부 회의는 한 학기 2회 이상 진행한다.

**제 3장 회원**

**제 1조 [회원 자격 및 의무]**

① 본 동아리의 회원은 본 동아리에 등록을 한 모든 이를 구성원으로 한다.

② 본 동아리에 등록한 회원은 활동 회원(재학생), 비활동 회원(휴학생)으로 구분한다.

③ 본 동아리의 회원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갖는다.

④ 본 동아리의 회원은 동아리 활동에 대한 자기의사를 개진할 수 있으며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
⑤ 본 동아리의 회원은 장부를 열람할 권리를 갖는다. 집행부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장부 열람을 거절할 수 없다.

⑥ 모든 활동회원은 정기운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 단, 임원의 판단으로 예외를 둘 수 있다.

**제 2조 [회원의 가입]**

① 본 동아리의 회원가입은 집행부가 정한 규칙에 따른다.

② 본 동아리의 가입은 가입신청서(첨부 1)를 작성함으로서 이루어진다.

③ 본 동아리의 가입원서 작성은 반드시 임원진과 대면으로 작성한다.

**제 3조 [회원의 탈퇴]**

①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집행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탈퇴가 성립된다.

② 회원의 입회원서 등 개인정보가 있는 서류는 탈퇴 후 1년간 보관한다.

③ 탈퇴 후 회비의 환급은 다음과 같다.

1. 가입 후 3주 이내이며 동아리 활동 전무한 경우 : 100% 환급

2. 가입 후 3주 이내이며 동아리 활동 존재하는 경우 : 75% 환급

3. 가입 후 7주 이내 : 50% 환급

4. 가입 후 10주 이내 : 25% 환급

5. 가입 후 10주 이상 : 0% 환급

**제 4장 활동**

**제 1조 [운동]**

① 본 동아리의 모든 회원은 매주 실시되는 운동에 참가할 수 있다.

② 운동은 정기 운동과 비정기 운동으로 구분한다.

③ 정기 운동은 수강정정기간이 아닌 전체학년 수강신청이 끝난 후, 투표를 통해 한 학기 동안의 운동 시간을 정한다.

④ 정기 운동은 주 2회, 회당 1시간 이상으로 한다.

⑤ 비정기 운동은 정기 운동 시간에 운동이 불가한 회원 및 추가로 운동을 하고싶은 회원을 위해 운영한다.

**제 16조 [총회]**

① 총회는 개강총회, 종강총회로 구분한다.

② 개강총회에서 회장은 아래의 항목을 발표 및 공지한다.  
 1. 임원진 소개  
 2. 활동일정 발표 (운동, MT 등)  
 3. 회비 공지

③ 종강총회에서 회장은 아래의 항목을 발표 및 진행한다.  
 1. 해당학기 장부 공개 및 결산보고  
 2. 회칙 개정 투표 진행 (회칙 개정안이 발의되었을 경우 시행)

**제 5장 재정**

**제 1조 [수입]**

① 동아리의 수입은 회비로 정하며, 이는 본 동아리의 활동비로 사용된다.

**제 2조 [회비]**

① 본 동아리의 모든 활동 회원은 집행부가 지정하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
② 재학생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경우,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
③ 비활동 회원이라도 동아리방 시설 및 비품(사물함 등)을 사용할 경우,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
1. 단, 사물함 사용의 경우 잉여 사물함이 존재한다면 회비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.

**제 3조 [결산보고]**

① 회장은 종강 총회에서 당 학기의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.

**제 6장 징계**

**제 21조 [목적]**

① 활동이 중단되어 동아리 활동에 지장을 주는 회원을 제명함으로써 회원들이 동아리 설립 취지에 맞는 지원을 받게 하고,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한 동아리활동을 유도하여 내실 있는 동아리를 만드는데 기여한다.

**제 22조 [유령회원 제명]**

① 휴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, 한 학기에 한 번 이상 운동 활동하지 않은 회원에게 경고가 적용된다.

② 경고를 2번 받은 회원은 임원진으로부터 제명 통보를 받는다.

② 제명된 회원은 다시 입회할 수 있으나, 경고 1회를 더 받으면 다시 제명된다.

**제 7장 동아리방**

**제 1조 [동아리방 사용]**

① 모든 회원은 동아리방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본 동아리 회원 이외의 인원은 동아리방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한다.

③ 본 동아리 회원 이외의 인원이 부득이하게 동아리방을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.

1. 동아리방 사용 시 회원과 비회원은 항상 같이한다.

④ 본 동아리방의 비밀번호를 비회원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한다.

**제 1조 [사물함 사용]**

① 모든 회원은 동아리방 내 사물함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.

② 잉여 사물함이 있을경우 집행부에게 사물함 사용 신청을 한 후 사용할 수 있다.

③ 집행부는 한 학기에 한 번 이상 사물함 사용 현황을 조사 및 공지를 해야한다.

**제 8장 동아리 등록**

**제 1조 [등록]**

① 동아리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학칙 및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른다.

**제 9장 부칙**

**제 1조 [회칙 발효]**

① 각 개정안의 개정 회칙은 다음 개정일부터 시행한다.

초판 [2020.03.30]

**제 2조 [회칙 개정]**

① 본 동아리의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회원의 투표에 의해 개정될 수 있으며 출석 인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이어야 한다. 단, 오탈자, 맞춤법 수정에 한하여 임원진이 임의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.